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원양어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제출방법,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 개선 (안 제2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항만국검색과 관련하여 불법 선박 관령성에 대한 유무 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등과 어획·전재·양륙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전재·양륙량과 어획량의 차이를 전재량으로 규정

나.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안 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규정

다. 안전관리지침 제출 방법 등을 정함(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방법,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와 출항 정지 조치 등 해사안전감독관이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

라. 불법어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과징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절차와 부과한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청의 독촉에 절차를 관한 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해양수산부령 제 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법 제6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⑤ 항만국검색관은 제1항을 위반한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9월 1일 이후: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

제25조의2제6항 중 “차이는 어종별”을 “차이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수산물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 어획량과 양륙량 또는 전재량

의 차이는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시간”을 “72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이가 어종별로”를 “차이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수산물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제량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제 허가를 받은 전제량과의 차이가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2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 관련 정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전제량 보고에 대한 정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대한 정보
4. 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에 대한 정보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정보
6. 법 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정보

7. 원양어선의 국제수산물기구 관할 구역에서의 조업 정보

8. 기타 해양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등

② 해양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선박명, 업체명, 허가 기간, 어업허가의 종류, 조업구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 중 불법, 비보고, 비규제 행위로 원양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관련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 관련 정보
4. 기타 해양수산물부 장관이 원양어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등

제30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함께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

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 및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3(출항의 정지 등) 해사안전감독관은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출항의 정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독촉) ①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

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 중 타목란, 하목란 및 거목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u>서면</u> 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 ----- ----- ----- ----- ----- ----- ----- ----- ----- ----- <u>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
1. ~ 4. (생략)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생략) 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의2제4항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2. (생략)	<삭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 상황 등의 보고를 할 것	<삭제>
3의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을 전제하고자 하는 경 우 사전 허가를 받을 것	<삭제>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국제수산물기구 관할수역에서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부수적으로 어획한 종(種) 에 대해서 국제수산물기구가 정 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할 것	<삭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 색) ① ~ ④ (생략)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 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항만국검색관은 제1항을 위 반한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해 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다만, 국제수산물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제량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제 허가를 받은 전제량과의 차이가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 관련 정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전제량 보고에 대한 정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대한 정보
4. 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에 대한 정보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협

군 선박에 대한 정보

6. 법 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정보

7. 원양어선의 국제수산물구 관할 수역에서의 조업 정보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선박명, 업체명, 허가 기간, 어업허가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협군 선박 중 불법, 비보고, 비규제 행위로 원양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관련 정보

<신 설>

3.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 관련 정보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등

제30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함께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

<신 설>

<신 설>

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 및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3(출항의 정지 등) 해사안전감독관은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출항의 정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

<신 설>

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독촉) ① 영 제20조의6 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양산업과	
연 락 처	044-200-5366